

6·25전쟁 당시 국군의 노획물자 관리·운용 연구

윤인수*

1. 머리말
2. 노획 및 노획물자 관리 양상
3. 노획물자 운용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노획’이란 일반적으로 “싸워서 적의 무기나 물자를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쟁에 있어 노획은 전과산정의 구체적인 객관적 지표일 뿐 아니라 적군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까지 일정부분 제공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아군의 부족한 물자나 장비의 확충 등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부분 경제적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기 마련이다.¹⁾ 이는 특히 산업화가 미숙한 개발도상국이 전쟁을 치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1) 허경, 「전시 노획품·전리품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제7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23쪽.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건국한지 불과 2년여 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남침에 의해 전쟁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신생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이나 국군의 열악했던 장비 보급 상태²⁾ 등을 두고 볼 때, 국군이 북한군이나 중공군으로부터 전투 중 획득한 노획물자가 단순히 전과산정 지표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군은 어떤 형태의 물자를 적군으로부터 노획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수집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처리하였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의 6·25 전쟁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단독의 주제로 연구한 성과는 전무한 형편이다. 대개는 단지 전사 연구의 과정에서 개별 전투결과나 전과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노획품의 수치를 나열·기술하고 있는 데에 그치고 있어 전쟁 기간 내지 휴전협정 체결 이후의 전반적인 노획 상황이나 그 관리 및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6·25전쟁 중 국군의 물자 노획 양상과 노획된 물자의 활용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방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6·25 전사 자료집과 당시 신문 자료들을 통해 대체적인 국군의 물자 노획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당시 행정부 및 대통령 지시관련 공문서 기록물들을 통해 노획물자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노획물자의 후방 및 민간 제공 등 운용관련 공문서 기록들을 통해 이들 노획물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지원사』, 국방군사연구소, 1997, 222~224쪽.

2. 노획 및 노획물자 관리 양상

1) 노획의 양상

국군의 노획은 6·25전쟁 개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국군은 남한내 빨치산 및 38도선 부근 북한 정규군과의 산발적인 교전에서 소화기 등을 이미 노획하고 있었고,³⁾ 이를 모아 대중적인 전시도 하였다. 특히 1950년 5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노획한 각종 소화기들을 모아 덕수궁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5월 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기도 하였다.⁴⁾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였는데, 개전 초기에는 주로 방어전을 펼치면서 수세적인 입장에 있던 국군이었기에 북한군으로부터 물자를 대량으로 노획하기는 어려웠다. 또 방어전 과정에서 간혹 소량의 무기 등을 노획했다하더라도 연대급 이하 부대는 전투일보나 상보를 작성해야 할 행정병까지도 전투병으로 보충되는 경우가 많아 노획물자에 대한 등록이나 별도의 관리 절차없이 즉시 유기하거나 자대 전력으로 활용한 예가 빈번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노획물자의 정확한 수량이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⁵⁾

노획물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집계 및 관리되는 시점은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 수복을 거쳐 10월 북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 10일 노획물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부정처분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

3) “捕虜만 六十名 畫間綜合戰果”, 『동아일보』, 1950년 2월 5일 ; “嶺南掃蕩戰完了 冬期作戰의 戰果多大”, 『동아일보』, 1950년 4월 11일 ; “共匪司令李孝濟射殺!”, 『경향신문』, 1950년 4월 14일 ; “또다시 南侵企圖 中部三八線서 共匪擊退”, 『동아일보』, 1950년 4월 18일 등 당시 신문지상에는 국군과 경찰이 북한 정규군과 빨치산을 상대로 거둔 다수의 전과가 발표되고 있었다.

4) “鹵獲戰利品 德壽宮에 陳列키로”, 『동아일보』, 1950년 4월 28일.

5) 陸軍本部, 『六二五事變 後方戰史 : 軍需篇』, 陸軍本部 史監室, 1955, 377쪽, 384쪽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낙동강선 방어작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185쪽.

한다.⁶⁾ 이어서 25일에는 내무부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 경찰로 하여금 노획물자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大秘指內第六號
 檀紀四二八三年 十月 二十五日
 大統領 晚(서명)
 內務部長官 貴下
 鹵獲遺棄車輛蒐集保管에 關한 件
 金泉-大田-서울-安東 등 各 奪還地域 山間 또는 村落等地에 鹵獲 또는 遺棄된 乘 用-貨物自動車 等屬이 散在하여 無主之物처럼 破損되어간다는 報告가 有하니 此를 警察로 하여금 澈底히 團束하여 一定한 場所에 蒐集保管케하고 그 蒐集保管狀況을 連續報告하기를 指示함.
 以上⁷⁾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노획물자에 대한 관리를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집계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총포류나 군용차량,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1955년 육군본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가 있어 이를 참고해 볼 만하다. 먼저 총포류 노획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⁸⁾

〈표-1〉 6·25 전쟁 기간 국군이 노획한 총포류

연도 \ 화기종류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합 계
보병총	19,621	10,923	1,034	68	31,646
기병총	2,157	1,612	582	21	4,372
다발총	1,356	3,947	831	108	6,242

6) 「鹵獲한 物資保有하라 李大統領談」, 『동아일보』, 1950년 10월 10일.

7) 大統領秘書室, 「鹵獲遺棄車輛收集保管에 關한 件」, 1950년 10월 25일.

8) 陸軍本部, 앞의 책, 1955, 398쪽.

기관단총	252	980	216	63	1,511
공랭식경기	1,481	1,609	149	50	3,289
공랭식중기	108	124	19	2	253
수랭식중기	696	301	12	0	1,009
60mm박격포	30	120	11	0	161
82mm박격포	255	104	16	53	428
14.5mm대전차총	186	108	3	1	298
45mm대전차포	39	24	4	0	67
57mm대전차포	23	0	0	0	23
76mm 산포	17	7	0	0	24
76mm 야포	117	2	0	0	119
120mm박격포	0	210	0	0	210
120mm 야포	20	17	1	0	38
99식 소총	1,649	3,225	313	98	5,285
38식 소총	868	1,318	91	3	2,280
30식 소총	43	56	8	0	107
44식 소총	63	332	13	0	408
1928기관단총	0	0	0	2	2
127mm고사기관포	10	13	0	0	23
자동소총	0	15	15	5	35
중국식무반동총	0	0	5	11	16
합계	28,991	25,047	3,323	485	57,846

주요 노획 총포류는 역시나 북한군과 중공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소련제 M-1891(보병총)과 M-1944(기병총), PPSH-41(다발총) 등으로 전쟁

전기간에 걸쳐 노획 총포류의 거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량 노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99식 소총이나 38식 소총, 44식 소총 등 광복이전 구일본군경이 사용하던 소총도 거의 8,000정 이상 노획된 것이 확인되는데, 원래 우리군경이 광복이후 인수했다가 빨치산 등에게 탈취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일본 소총들은 1951년도에 가장 대량으로 노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951년 1월부터 본격화된 빨치산 소탕 작전의 영향으로 보인다.⁹⁾

다음으로 통신장비의 노획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¹⁰⁾

〈표-2〉 6·25 전쟁 기간 국군이 노획한 통신장비

연 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합 계
수 량	24	290	9	66	389

실제 통계는 통신장비 종별과 월별 노획수량까지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자세하지만, 본고에서는 너무 번다한 관계로 연도별 노획 수량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US R RADIO SET'나 'US R TELEPHONE', 'US R SWITCH BOARD' 같은 미국제 통신장비들이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개전초 수세에 있던 국군이나 미군이 북한군에게 노획당했던 통신장비를 9월 이후 전세를 회복하면서 다시 탈환한 것으로 보인다.¹¹⁾

마지막으로 차량의 노획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¹²⁾

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유격투쟁노선에 있어서」, 『빨치산 자료집』 제2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52쪽 : 한편 빨치산 부대에서의 구일본군 소총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이태, 『남부군』, 두레, 2003, 68~69쪽 참고.

10) 陸軍本部, 앞의 책, 1955, 398~400쪽.

11) 陸軍本部, 앞의 책, 1955, 385쪽.

12) 陸軍本部, 앞의 책, 1955, 385쪽.

〈표-3〉 6·25 전쟁 기간 국군이 노획한 차량

차량종류	연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합계
Gaz-67	0	31	0	0	31
Zis 계열 트럭	0	323	3	0	326
Gaz 계열 트럭	0	326	3	0	329
합계	0	680	6	0	686

역시 주로 소련제 Gaz-67 야전승용차나 Gaz 및 Zis 계열의 트럭 등이 노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신뢰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950년도와 1953년도의 차량 노획 통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1953년도의 경우, 휴전협상 타결직전으로 전선 교착기였음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정도 수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50년도의 경우, 10월 국군의 북진 당시 다수의 북한군 차량 등을 노획하여 그대로 운용했음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¹³⁾도 있고, 1951년 6월 25일 개전 1년 이래 노획무기 현황을 소개하는 신문기사¹⁴⁾에서도 트럭류만 953대를 노획하였다고 전하고 있어, 위 통계의 전체 노획차량 수량인 686대 보다도 많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950년에 단 1대의 노획 차량도 없었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려우며 상당수가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3) “十五輛을 鹵獲 彈藥滿載한 貨車”, 『동아일보』, 1950년 10월 27일; “殘賊兵掃蕩進陟 全國警察의 活動活潑”, 『동아일보』, 1950년 11월 1일.

14) “敵射殺無慮廿五萬 敵의 人海戰術도 水泡化”, 『동아일보』, 1951년 6월 25일. 전거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사에서 전하는 개전 1년간 노획무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종 별	소 총	기관총	화 포	전차	장갑차	트럭	승용차	사이드카	비행기	선박	마필
수 량	78919	77	2864	288	60	953	78	107	183	33	469

전반적으로 1955년 육군본부에서 공식 집계, 발표한 노획무기 수량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동아일보의 노획무기 현황의 수량은 미군을 포함한 UN군 전체의 전과를 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무기 이외의 노획물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1955년 발표된 육군본부의 공식적인 노획품 통계에서도 ‘병참관계물자’, ‘공병관계장비’, ‘의무관계장비품 및 의약품’은 ‘數未詳’으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⁵⁾ 따라서 무기를 제외한 물자의 노획 양상은 신문 보도나 공문서 등에서 산견되는 기록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먼저 1950년 10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탈환 당시 무기를 제외한 노획물자를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계하여 이재민 구호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¹⁶⁾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곡식을 비롯한 식료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1951년 6월에는 1사단이 노획한 수수(高粱) 94타와라(俵 : 일본식 가마니)를 서울시민에게 배급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¹⁷⁾ 1950년 11월경에는 황해도에서 노획한 홍삼 146상자를 헌병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¹⁸⁾

이밖에 1950년 10월경 1군단이 함흥에서 생사(生糸)를 노획하여 임의로 매각했다는 기록¹⁹⁾과 역시 함흥 흥남지구에서 통조림을 노획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²⁰⁾ 특히 국군 모부대가 진남포제련소에서 조동판(粗銅版 : 금제련시 사용하는 동판) 31톤을 노획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이들 조동판은 헌병대의 호송으로 장항제련소로 인계, 금 72kg 4.24g과 은 299kg, 납 278kg을 추출하여 금은 한국은행이 217,173,800원에 매입하였고, 나머지 금속은 재무부가 공매 처분하여 세관수입계정에 입금하였다고 한다.²¹⁾ 또 국군 8127부대는 1950년 10월 평안남도 희천 묘향산 인근에서 김일성이 사용했었다는 소련제 Zis-110 고급 승용차를 노획하기도 하였다.²²⁾

15) 陸軍本部, 앞의 책, 1955, 385쪽.

16) 大統領秘書室, 「鹵獲品處理에 關한 件」, 1950년 10월 4일.

17) “한자씩 茂盛한 雜草 主人없는 서울消息 -步道에는 參새의 떼”, 『동아일보』, 1951년 6월 13일.

18) 大統領秘書室, 「紅蔘押收品調査 및 處理에 關한 件」, 1950년 11월 18일.

19) 大統領秘書室, 「咸興으로부터 搬入된 生糸處理에 關한 件」, 1951년 4월 12일.

20) “咸興與南地區에서 鹵獲한 통조림을 調査해서 國防部에서 的當히 使用”, 國務總理室, 「國務會議報告綴」, 1951년 1월 26일.

21) “國內서 製鍊處分 問題의 金塊에 韓銀에서 解明”, 『동아일보』, 1960년 6월 12일.

22) “金日成乘用車 李大統領에게 贈呈”, 『동아일보』, 1950년 11월 10일.

2) 노획물자의 관리

노획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1948년 10월에 제정되어 1961년까지 군형법으로 준용된 국방경비법의 제31조 노획한 적산 조항에 나타나고 있다.²³⁾

第三十一條 鹵獲한 敵産

敵으로부터 鹵獲한 公有財物의 保全을 怠慢히 하거나 又は 此를 不正處分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敵으로부터 鹵獲한 又は 敵이 遺棄한 財物을 賣買去來 或은 其他如何한 方法으로나 此를 處分함으로써 自己 或은 直接間接으로 關係가 有한 第三者를 爲하여 利得利潤을 收受 或은 期待하거나 又は 如斯한 財物이 自己의 占有管理 或은 支配下에 들어온 時 此에 對하여 迅速히 關係上官에게 報告하여 該財物을 引渡치 아니하는 如何한 軍法被適用者든지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罰金刑 又は 他刑罰에 處함. 前項刑罰은 此를 併科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노획물자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를 은닉, 사적으로 매각하는 등의 부정처분을 통해 취한 이익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불명예제대에 처하는 동시에 급여 및 수당을 전액몰수하였다. 또한 그 이익이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역 6월 또는 벌금형 및 2/3 감봉 6월에 처하였으며,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3월 또는 벌금형과 함께 2/3 감봉 3월에 처하였다.²⁴⁾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노획된 물자의 온전한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은닉이나 임의 매각 등 부정처분 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노획물자의 등록과 관리, 운용 방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당시 국군에게는 체계적인 노획물자 관리 규정이 없었던 까닭에 1950년 10월 북진 이후 내려진 이승만 대통령의 노획물자 관리 지시에도

23) 元世權, 『軍法解説』, 聖母出版社, 1953년, 41쪽.

24) 元世權, 위의 책, 1953년, 43쪽.

불구하고 이를 해당부대에서 임의로 처분, 활용하는 상황은 그대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데로 1950년 10월경 1군단이 함흥에서 노획한 바 있는 생사 179고리(梘)는 1군단이 임의로 민간업자에게 매각처분했다가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에 대해 1951년 4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재무부로 하여금 이 생사를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을 1군단으로부터 생사 매입을 주장하는 해당 민간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면서 추후에는 국군이 수복지구에서 노획한 물자의 임의 처분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의 제정을 지시하게 된다.²⁵⁾ 또 1951년 5월 전개된 용문산전투에서도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한 마필을 6사단 군수처에 보고없이 중대단위로 사병들이 마구 도살하여 취식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서는 노획물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전술했듯 1950년 10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로 하여금 노획물자의 수집과 관리를 지시하였고 이때부터 노획물자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년 11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지시를 내무부와 대한청년단에 내리게 된다.²⁷⁾

25) 大統領秘書室, 「咸興으로부터 搬入된 生糸處理에 關한 件」, 1951년 4월 12일 : 企劃處, 「咸興으로부터 搬入된 生糸處理에 關한 件」, 1951년 4월 21일.

2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용문산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222쪽.

27) 大統領秘書室, 「函獲遺棄軍物蒐集에 關한 件」, 1950년 11월 13일.

大秘指內/韓青新十三號

檀紀四二八三年 十一月 十三日

大統領 晚(서명)

內務部長官

大韓青年團長 貴下

鹵獲遺棄軍物收集에 關한 件

破傷된 모든 車輛과 탱크와 軍器軍物其他破鐵等 多大한 國有財産이 各處에 散在한 것을 收集하는 사람이 업는 까달게 사람들이 함부로 뜨더가며 옮겨 가서 損失이 클뿐 더러 보기에 不潔함으로 警察로 하여금 一一히 收集保管하고 順次報告하기를 指示한 바 인데 戰亂以後 治安等節로 말미아마 이에 相當한 注意를 주기어려운 形便인듯 하니 大韓青年團에 이 重要한 責任履行에 協力할 것을 命하는 바이니 各々 所在地에서 맞흔 區域內에 있는 것은 그 區域青年團이 警察에 極力協調해서 一一히 收集保管한 後 卽時 報告할 것이며 또 貴重이나 體積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運搬하기 어려운 것은 一一히 報告해서 政府의 方針을 어더 一定한 場所에 收集케 할 것을 指示함.
以上

10월 북진 이후 노획한 무기 등은 국군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편제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상된 채로 노획된 차량 등은 그대로 유기·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고철수집상들이 무단으로 수거하여 고철로 매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0월 25일 경찰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경찰은 후방의 치안유지 활동 등으로 이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청년단이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당시 대한청년단이 모병업무나 빨치산 토벌 등 치안유지 업무뿐 아니라 노획물자의 수집과 관리에도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²⁸⁾

28) 하재평, 「한국전쟁기 국가 총력전 전개 양상 : 참전단체 및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戰史』 제3호, 군사편찬연구소, 2001, 18~21쪽.

이렇게 경찰과 대한청년단이 수집·관리하던 노획물자는 1951년 3월 21일 부터는 국방부로 주관이 바뀌게 된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와 내무부에 내린 지시 사항이다.²⁹⁾

大秘指國防第一九號
檀紀四二八四年三月二十一日
大統領 晚(서명)
國務總理經由
國防部長官, 金宗元大鈴
內務部長官, 大韓青年團長 貴下
破傷軍器軍物收集及그 調査에 關한 件
既往에 破傷된 탱크와 軍器軍物等 遺棄된 것을 內務部和 青年團에서 다 收集報告하라는 指示를 하었는데 今에 八軍과 諒解가 있어서 유엔軍에서 使用하던 것을 除外하고 그 餘는 다 國軍의 需用으로 收集하기로 決定하였스니 國防部에서 이를 主掌하며 國防部에서는 特別히 엇던 指揮官이나 或 엇던 團體에 一定하게 發令해서 責任을 지고 一々히 收集保管케 하고 이를 報告하며
既往 內務部和 青年團에서 收集한 것은 다 엇디케 되었는지 이에 對해서는 金宗元 大鈴이 이를 切實히 調査해서 報告할 것을 指示함.
以上

이후 노획·유기된 차량 등 군용 물자는 일괄하여 국방부에서 수집·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 손상된 노획차량의 경우,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수리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 손상된 노획차량을 수리하여 대여 형식으로 사용(私用)하는 것도 일정부분 허가되었다. 이렇게 민간에서 활용한 노획차량들은 후술하겠지만 1956년에 일괄하여 사정가격으로 불하된다.³⁰⁾

29) 大統領秘書室, 「破傷軍器軍物收集及그調査에關한 件」, 1951년 3월 21일.

30) 總務處, 「函獲 및 遺棄車輛拂下處分の 件」, 『國務會議附議案件』, 1956.

그러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노획물자 관리에 대한 지시를 꾸준히 내리고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규정이나 지침은 휴전협정 체결 때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62년 제정되어 기존의 국방경비법을 완전히 대체한 균형법에서도 역시 노획물자 관련규정은 “敵로부터 鹵獲한 物件을 橫領하거나 燒燬 또는 損壞한 者は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に 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3. 노획물자 운용 양상

1) 즉시 전력 활용

6·25 전쟁당시 국군은 비교적 건군 초기인데다 갑작스럽게 개전을 맞이한 상황이었으므로 장비 등 보급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전술했던 것처럼 교전 중 또는 수복지구에서 노획한 온전한 군용차량 등은 별도의 등록이나 관리 절차없이 자연스럽게 자대전력으로 즉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특히 노획무기의 경우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통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국군의 열악한 보급상황에 따른 노획물자의 즉시 전력화는 적군의 피복류까지 노획하여 착용하는데까지 이르는데, 1951년 5월 용문산 전투 당시 6사단 2연대 11중대 병력은 화천발전소를 탈환하고 나서 중공군의 작업복과 내의, 농구화 등을 노획하여 착용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전투복까지 착용하는 바람에 피아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³¹⁾ 이러한 전쟁 중의 정규전 외에도 휴전 이후 각군 첩보부대에서는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선박 30여 척을 1960년까지 운영하기도 하였다.³²⁾

3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222쪽.

32) “이달中民間에 拂下 老朽鹵獲船舶 15隻”, 『동아일보』, 1960년 6월 14일.

2) 후방 및 유격대 지원

후방의 경찰 및 유격대나 형무소의 경비교도대도 노획무기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10월 북진 이후, 최전선은 비교적 안정되어간 반면 후방은 개전 전부터 준동해오던 기존 빨치산부대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고립된 북한군 부대의 퇴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낙오된 일부 부대는 그대로 빨치산 부대에 합류함에 따라 빨치산 부대의 전력이 일정부분 강화되면서 치안불안 요소가 더 커진 것이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만성적인 장비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1월 국방부에 지시하여 전선에서 노획한 총기 9,000정 정도를 경찰에 인도하도록 하였고³⁴⁾ 1951년 12월 7일 법무부는 검찰에게 종결된 빨치산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었던 노획무기를 지방관할 소재의 형무소 경비대에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³⁵⁾ 한편 육군본부에서는 직할의 유격대를 편성하여 북한군 패잔병 및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1950년 10월 기존의 유격 부대들을 재정비하여 6개 대대로 구성된 유격사령부를 편성하였고 재편된 유격대의 장비는 모두 노획장비로 충당하도록 하였다.³⁶⁾ 이밖에도 북한군 점령지역의 후방교란을 위하여 정보국에서 별도로 편성한 결사유격대 또한 무기 일체를 노획 무기로 지급받았다.³⁷⁾

한편 이렇게 불안한 치안상황을 감안하여 경찰 이외의 정부·국회·법조계의 고위 인사 및 대한청년단과 각종 반공사회단체 간부들은 호신용으로

33) “南韓殘匪最後掃蕩戰”, 『동아일보』, 1950년 12월 11일 ; 이태, 앞의 책, 2003, 59~66쪽 ; 한종욱, 「역대 군·경 합동작전 사례연구」, 『군사사 연구총서』 제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남정옥, 「6·25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지도와 수행」, 『전사』 제6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108~111쪽, 141~144쪽 ; 김종준, 「한국전쟁기 서부경남지역 빨치산의 조직과 활동」,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 21~26쪽.

34) 大統領秘書室, 「鹵獲軍器에 관한 件」, 1950년 11월.

35) 法務部, 「沒收武器處分에 관한 件」, 1951년 12월 7일.

3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3, 84~88쪽.

37)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3, 105~114쪽.

권총의 소지가 허용되었는데,³⁸⁾ 이러한 권총 중에서도 전선에서 노획한 소련제 권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소련제 권총의 1952년 5월 후방 보급 상황은 다음과 같다.³⁹⁾

〈표-4〉 1952년 당시 각계 인사의 노획 소련제 권총 소지 현황

분류	정 부	국 회	법조계	대한청년단	기타사회단체	언론인	일 반	합계
수 량	3	9	6	4	8	2	19	51

정부에서는 비서관 1명과 사무관 2명,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6명과 수행원 1명, 국회사무처직원 2명, 법조계에서는 판사 1명과 검사 3명, 법원·검찰청 직원 2명이 노획 소련제 권총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 회사원이나 의사, 상공업 또는 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인들도 19명이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이러한 노획무기의 후방 보급이 더욱 활발해져 전쟁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손상된 노획무기들까지도 육군병기창에서 본격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다음 경찰로 인계되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실전적인 군사훈련의 실시를 위해 이들 노획 총기들에 대한 대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⁴⁰⁾

3) 민간 대여 및 불하

휴전 이후 1956년 국방부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노획 차량에 대한

38) 治安局保安課公安係, 「拳銃押收 및 假領置要綱」, 1952년 5월, 1쪽.

39) 治安局保安課公安係, 앞의 문서, 1952년 5월, 7쪽.

40) “鹵獲武器를 貸與 學徒軍事訓練本格化”, 『경향신문』, 1953년 12월 5일 ; “鹵獲武器를 活用 內務國防連席會合意”, 『경향신문』, 1954년 1월 15일.

민간 공매와 함께 이미 민간에서 자체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던 유기·노획 차량과 기관(엔진)에 대해서도 사정가격으로 불하처분할 것을 추진하게 된다.⁴¹⁾ 공매 및 불하 당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노획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표-5〉 1956년 당시 군 보유 노획 차량 현황

차종 \ 지구별	부산	경산	원주	속초	부평	춘천	진해	서울	합계
Zis 계열 차량	13	4	1		23	8	4		53
Gaz 계열 차량	12	5	2	3	24	12	6	2	66
소련제 3륜차		1							1
Gaz-67					1	1			2
日 産							1		1
豊 田	3							1	4
시 보 레						1			1
인 터						1			1
쓰리쿼터								1	1
합 계	28	10	3	3	48	23	11	4	130

차량들이 구체적인 제식명칭이나 번호로 표기되지 않아 차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소련제 Zis, Gaz 계열의 차량 등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닛산(日産)과 도요다(豊田) 계열의 차량과 3/4 닷지(쓰리쿼터)같이 미국제 차량도 소수지만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개전초기 북한군에게 노획당했던 것을 전세를 회복함에 따라 다시 노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41) “노획한 車輛도 民間人에 拂下”, 『동아일보』, 1956년 10월 11일 ; 總務處, 앞의 문서, 1956.

민간에서 수습·수리하여 군으로부터 대여형식으로 활용하고 있던 노획 차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6〉 1956년 당시 민간 대여 노획 차량 현황 및 불하 사정가격

지구별 차종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불 하 사정가격
Zis 계열	88	80	21	30	50	44	91	19	7	430	15000
Gaz 계열	163	89	85	36	55	50	52	20		550	15000
쓰리쿼터	10	30	7	3	24	12	96	7	4	201	25000
日 産	5	2	3	1	10	18	119	2	2	162	20000
이 즈 스	3	3	1	1	10	11	62	7	1	99	20000
윌 리 스	7	2		1		3	10	4		27	31000
포 드	12		2		11	10	57	14		106	30000
시 보 레	6	3	3	1	7	7	34	3	3	67	30000
豊 田	7	2	5	1	15	11	41	7	4	93	20000
기 타	117	133	25	11	53	107	159	63	26	694	15000
합 계	426	344	152	85	235	273	721	146	47	2429	

역시나 소련제 Zis, Gaz 계열 차량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역시 포드나 윌리스 계열같은 미국제 차량도 보이는데, 아마도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전 초기 북한군에게 노획당했다가 다시 노획했던 것일 수도 있고 국군이나 UN군이 유기한 것을 개인이 수습·수리하여 사용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불하사정가격은 소련제보다 미국제가 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이렇게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노획차량에 대한 공매와 민간에서 대여 중이던 노획차량에 대한 불하는 1959년 9월 마무리된다. 총 공매 및 불하대상인 4,148대(완성차 외 기관부 포함) 가운데, 2,908대가 민간에 정상적으로

공매 및 불하되었고, 798대는 폐차 및 행방불명, 442대는 대여인이 불하를 기피하여 고발조치되었다.⁴²⁾

이러한 민간 불하는 차량뿐 아니라 선박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는데, 1960년 6월 국방부 관리국에서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했던 선박 중 노후화된 15척(총 560t)을 민간에 공매하기도 하였다.⁴³⁾

4) 선전·전시 활용

‘노획’이라는 행위가 결국 적의 물자를 전투를 통해서 빼앗는 것인 만큼, 이는 전투에서의 승리와 그에 따른 전과를 가장 극적으로 현시(顯示)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전선과 유리되어 있는 후방의 일반 국민들은 전황이나 승전보를 거의 신문이나 방송으로만 접할 수 있어 전장에서의 승전 상황을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에게 노획한 무기를 직접 후방의 국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실제 전과의 객관적 증거로서 최전선에서의 승리를 직접적으로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더 나아가 국군 내지는 체제의 우월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휴전 이후에는 전쟁/군사관련 박물관에 전시됨으로서 전후 세대에게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승리의 기억을 유지·재생산·확산시키는 교육적 역할도 담당하기 마련이다.⁴⁴⁾

따라서 이러한 전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전 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었으며, 개전 이후의 노획무기 전시는 동락리 전투 이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7월 진천-화령장 전선에서 국군 7연대 2, 3대대는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동락리에서 기습하여 궤멸시키게 되는데, 이때 노획한 무기를 대전에서 일반국민에게 전시함으로써 국군이 일방적으로 패주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선전하는데 활용된 것이다. 이때 노획된 소련제

42) 국방부, 「전리차량(기관)불하업무 종결의견」, 1959, 1쪽.

43) 앞의 기사, 『동아일보』, 1960년 6월 14일.

44) 정호기, 「전쟁의 기억과 박물관 그리고 재현」, 『영월연세포럼 발표문』, 2011, 2, 12쪽.

무기의 일부는 UN으로도 보내져 소련의 전쟁개입을 폭로하는 데에도 이용되었으며 장차 UN군 참전의 명분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⁴⁵⁾

이러한 노획무기에 대한 전시는 1952년 3월 18일부터 부산시청 앞에서도 개최되었고,⁴⁶⁾ 이는 반공전시회와 연계하여 휴전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1956년 10월에는 육군본부와 첩보부대가 각각 서울 창경원에서 노획무기와 문서, 피복류를 일반에게 전시한 바 있다.⁴⁷⁾ 또 1958년 2월 5일 반공회관이 개관되면서 이들 노획무기에 대한 상설전시도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⁴⁸⁾ 이후 이러한 상설전시는 1966년 10월에 개관한 군사박물관(현 육군박물관)과 1978년 4월에 개관한 여의도 종합안보전시장(1995년 해체), 1994년 6월에 개관한 전쟁기념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⁴⁹⁾

5) 기 타

일부 상징성이 강한 노획물의 경우, UN군 특히 미군 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물로도 활용되었다. 전술한대로 국군은 1950년 10월 평안남도 희천 묘향산 인근에서 김일성이 사용했던 소련제 Zis-110 승용차를 노획하였다. 이 승용차는 즉시 국방부를 거쳐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도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다시 1950년 12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월턴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의 부인에게 위로차 선물하였다.⁵⁰⁾ 이후 미국내 중고차시장을 전전하던 이 차량은 대우가 1981년 9월 뉴저지 소재 고물상에게

4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146~148쪽.

46) “鹵獲武器展示會 18일부터 市廳앞에서”, 『동아일보』, 1952년 3월 17일.

47) “鹵獲兵器展示會 來月 14일부터”, 『동아일보』, 1956년 9월 20일 : “敵의 大型탱크引揚 漢南洞나룻터에서”, 『경향신문』, 1956년 9월 26일 : “陸軍 反共展示會 26일부터 昌慶苑서”, 『경향신문』, 1956년 10월 24일.

48) “反共會館開館 各種戰利品展示”, 『경향신문』, 1958년 2월 6일.

49) 정호기, 앞의 논문, 2011, 5~8쪽.

50) “故워-커大將 夫人에 進呈 金日成高級乘用車”, 『동아일보』, 1951년 7월 14일.

75,000\$에 매입하였고 1982년 10월 21일 부산에 도착, 25일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전시를 마친 뒤 여의도 종합안보전시장에서 상설전시 되었다.⁵¹⁾ 이 승용차는 다시 1998년 삼성항공에 의해 주행 가능하도록 수리된 후,⁵²⁾ 현재는 사천의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1951년 5월 전개된 용문산 전투 중 화천발전소 탈환과정에서 중공군 지휘관이 사육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애완용 원숭이가 노획되는데, 최종적으로 리지웨이(Mathew B. Ridgway) 사령관에게 선물로 제공되었다는 증언⁵³⁾이 있으며 1951년 6월 도솔산 전투에서는 해병 1연대 9중대가 북한군 훈장인 '금장 1급 1호'를 노획, 대대와 연대정보과를 거쳐 파견 미군고문관 해리스 중령(Charles W. Harryson)이 원대 복귀할 때 선물로 제공했다고 한다.⁵⁴⁾

4. 맺음말

6·25 전쟁 중 국군은 다양한 형태의 물자를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하였다. 개전 이후부터 9월까지의 주로 북한군으로부터 물자를 노획당하다가 10월 이후 북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물자를 노획하기 시작한다. 주요 노획물자로는 우선 무기류가 가장 대표적인데, 총기류는 소련제 M-1891이나 M-1944, PPSH-41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차량의 경우는 역시 소련제 Gaz-67 야전승용차를 비롯한 Gaz 계열 트럭이나 Zis 계열 차량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도 식량이나 홍삼, 생사를 비롯하여 제련소의 조동판 등 실로 다종다양한 물자들이 노획되었다.

51) "6·25때 平壤서 노획 金日成車 釜山港에", 『동아일보』, 1982년 10월 21일; "蘇製 金日成승용차 서울驛광장서 公開", 『경향신문』, 1982년 10월 25일.

52) "'김일성승용차' 50년만에 복원", 『경향신문』, 1998년 6월 26일.

5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3, 222쪽.

54) 국방군사연구소, 『兜率山戰鬪』, 국방군사연구소, 1993, 190~191쪽.

그러나 처음부터 국군에게 이들 노획물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제정되어 1961년까지 군형법으로 준용되었던 국방경비법 31조에서는 이미 노획된 물자의 부정처분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무기의 경우는 별도의 등록이나 관리절차 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은 대부분 바로 야전에서 국군의 전력으로 편입되어 운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물자도 이를 노획한 해당부대가 임의로 처분·매각하는 상황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10월부터 노획물자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경찰과 대한청년단에게 지시하게 되었고, 1951년 3월부터는 국방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노획된 물자의 운용 방법은 매우 다양했는데,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총기류는 후방의 경찰이나 형무소의 경비교도대로 인계되어 후방의 치안유지 활동에 활용되기도 했으며, 권총은 주요인사의 호신용으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휴전 이후 군에서 보유하거나 민간에서 수리, 대여하여 사용하던 노획차량은 1956년 10월 일괄하여 민간에 불하처리 되었다. 또 노획이 갖는 ‘승리’에 대한 상징적 현시 및 선전 효과로 말미암아 후방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상설전시는 1956년 2월 반공회관의 개관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이후 육군박물관과 전쟁기념관 등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귀하고 이채롭거나 상징성이 큰 노획품의 경우, 선물로도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0년 10월 묘향산 인근에서 노획된 김일성의 소련제 Zis-110 승용차로 1950년 12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워커 장군의 부인에게 애도의 선물로 제공되었다. 그밖에 용문산 전투에서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한 애완용 원숭이는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도술산 전투에서 노획한 북한군의 훈장은 해병대에 파견나온 해리스 중령에게 제공되었다.

이렇듯 6·25 전쟁 중 북한군 및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한 각종 무기와 물자들은 건군 초기 열악했던 국군의 장비 보급 여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후방 내지 민간에 대한 활발한 제공·지원으로 치안 안정화와 전후 재건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이는 물론 10월 북진 이후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노획물자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활용했던 국군과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6·25전쟁 중, 국군에 한정해서 노획물자의 관리 및 운영 양상을 살펴본 것으로, 미군을 포함한 UN군 전체의 노획물자 관리 및 운영 양상에 대해서 고찰하지는 못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미군이 노획한 문서류에 대해서는 노획 경위나 이후 이관 및 활용·해제·연구에 대한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⁵⁵⁾ 국군 이외의 UN군이 북한군이나 중공군으로부터 노획한 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 2012. 9. 26, 심사수정일 : 2012. 11. 19, 게재확정일 : 2012. 11. 30)

주제어 : 6·25전쟁, 노획물자, 노획차량불하, 이승만, 김종원, 대한청년단, 전쟁기념관, 육군박물관, 선전, 전시

55)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해제(1)」, 『아시아문화』 제2호,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정병준, 「탈취·노획의 전쟁기록」, 『역사비평』 제73호, 역사비평사, 2005; 김광수,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 및 자료분석」, 『군사』 제55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등 다수.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Captured Materials by the ROK Army during the Korean War

Yoon, In-su

During the Korean War, the ROK army captured materials of various forms from the North Korean army and Chinese volunteer army. Their major captured material was weaponry. Most of the firearms they captured were Soviet M-1891, M-1944, and PPSH-41, and most of the vehicles they captured were Soviet Gaz-67 light utility vehicles, Gaz, and Zis vehicles. In addition, they also captured grains, ginseng steamed red, raw silk, and copper plate at a gold smelting factory, which reflect the great variety of the captured materials

However, it seems that they had no systematic management or guidelines for captured materials in the beginning. Article 31 of National Defense Act(國防警備法) which was enacted in 1948 and used as the military law till 1961, had provisions about punishments for those who illegally disposed of captured materials. As for weaponry, the ones in a good condition seem to have been included in the firearms of the ROK army and used by them on the field without particular registration or management procedures. It also seems that the units that captured other types of captured materials frequently disposed of or sold them at discretion. In such a situation, President Syngman Rhee ordere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police, and the right wing to supervise and manage captured materials in October, 1950.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ok over the responsibility in March, 1951.

Captured materials were used in many different ways, whose specific patterns were as follows: first, the firearms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nd prison guards in the rear and used in activities to maintain public

peace in the rear. The captured Soviet pistols were used for self-protection by major figures. The captured vehicles possessed by the military or repaired and used by civilians were all disposed of in October, 1956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Some captured materials were on display for the general public to see in the rear for propaganda purposes. Finally, captured materials that were peculiar or very symbolic were given to U.S. military leaders as gifts.

Key Words : Korean War, Captured materials, Captured vehicle disposal, Syngman Rhee, Jongwon Kim, Daehan Youth Corps, The War Memorial of Korea, Korea Army Museum, Propaganda, Display